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종합) 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5.07. - 2024. 5. 21.(15일간)

2. 공고장소: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자동차: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연천군 종합민원과 차량등록팀(☎031-839-2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7.

연 천 군 